

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전화 (02) 731-6742 /전송 731-6745
 처리부서 : 도시계획과(시청본관2층) 담당 : 박충제

문서번호 도시 58410-1378

시행일자 1995. 11. 09.

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	
보존			
도시계획국장	전결		
도시계획과장		법무담당관	
종합계획계장		지역계획계장	
기안	박충제	협조	

제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 고시

1. '95년 제7차('95.10.24)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·결정된 강남구 논현동 129일대(논현생활권중심)의 4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(도시계획의 결정)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(권한의 위임)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지구)지정 고시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첨부 : 1. 고시(안) 1부.

2.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도면 각 1부.끝.

(제 2 안)

수신 :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 보고

1.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도면 각 1부.끝.

서울특별시 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토지정책과장

(제 3 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

다. 근거법규 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, 제8조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제 4 안)

수신 : 공보1담당관

제목 : 시보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

다. 근거법규 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, 제8조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도 시 계 획 과 장

(제 5 안)

수신 : 강남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제목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 통보

1. 강남구 도정 58412-1662('95.6.30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귀구에서 요청한 논현동 129번지 일대 논현생활권중심의 3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(도시계획의 결정)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고시문 사본을 귀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도록 하시고,

3. 같은법 제13조(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)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를 조속 이행토록하여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도면 각 1부. 끝.

(제 6 안)

수신 : 강동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제목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통보

1. 강동구 도정 58410-1204('95.6.2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귀구에서 위대호로 요청한 고덕동 215-1, 213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고시문 사본을 귀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도록 하시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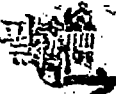
3. 같은법 제13조(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)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를 조속 이행토록하여 도시계획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223

원본대조 

(제 7 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 통보

1.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 사항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
2.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도면 각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수신처 : 시설계획과장, 재개발과장, 공원과장, 녹지과장, 주택개량과장, 도로계획과장, 교통기획과장, 주차계획담당관, 하수처리과장, 도시경관과장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06 호

일시	1995.11.9	제 310 호
담당자	김희재	김부담
		

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

1. 도시계획법 제12조(도시계획의 결정)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(권한의 위임)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을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2조(도시계획의 결정)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(고시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, 강동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5년 11월 9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 조서

구분	위치	용도지역 변경 내역				용도지구 지정 및 면적	비고
		기정	변경	면적(㎡)			
1	논현생활권 중심 강남구 논현동 129일대	일주지	반거역 준주거지	69,900		도시설계지 69,900㎡	
2	경기고교 동측도로변 강남구 삼성동 74일대	일상지	반거역 일주지	4,080		-	
3	개포현대 APT부지 강남구 개포동 614일대	준주거지	반거역 일주지	6,900		-	
4	삼성사원 APT부지 강남구 일원동 626일대	준주거지	반거역 일주지	6,100		-	
5	고덕제7 근린공원 강동구 고덕동 215-1일대	자녹지	연거역 일주지	603.1		-	
	강동구 고덕동 213, 213-1	일주지	반거역 자녹지	603.1		-	

나. 도면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, 강동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.

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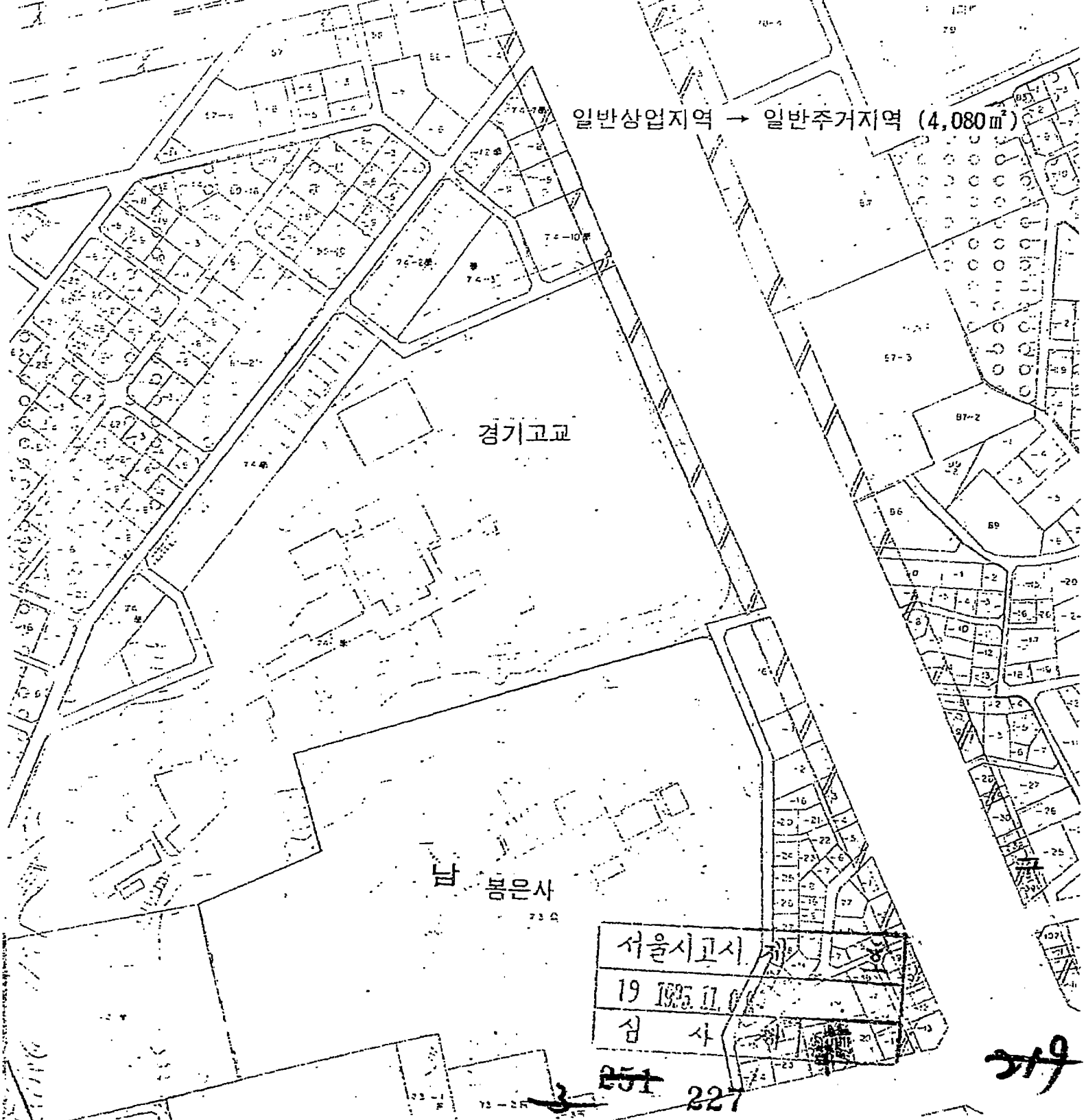
위 치	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내역	면 적(㎡)	용도지구 지 정	비 고
강남구 논현동 58,87,129,207 일대	일반주거지역 →준주거지역	69,900	도시설계 지 구	논 현 생활권중심



1995. 11. 09
김 자 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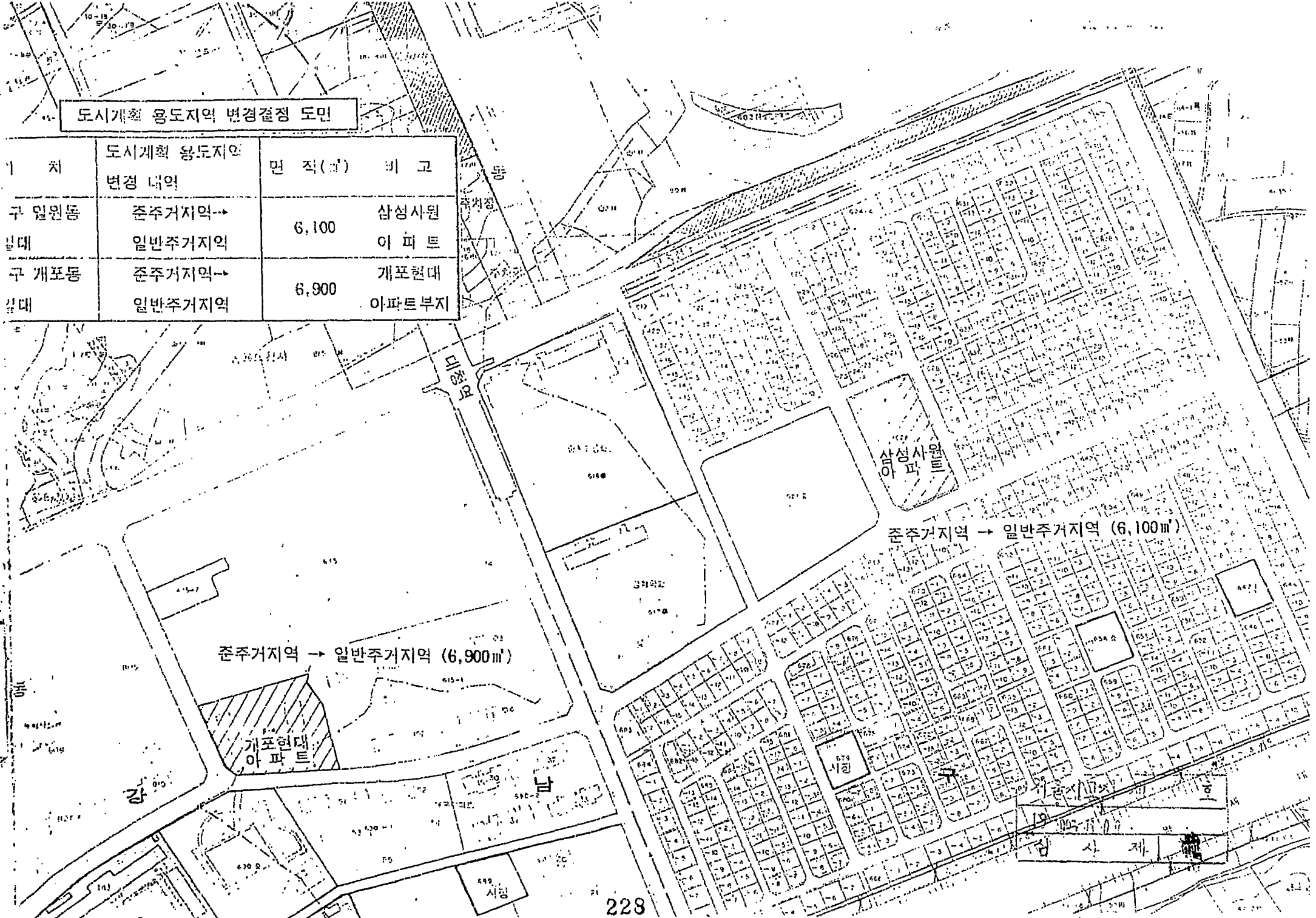
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면

위 치	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내역	면 적(㎡)	비 고
강남구 삼성동 74일대	일반상업지역 → 일반주거지역	4,080	경기고교 학교부지



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면

기	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내역	면 적(㎡)	비 고
구 일원동 밭대	준주거지역→ 일반주거지역	6,100	삼성사원 아파트
구 개포동 밭대	준주거지역→ 일반주거지역	6,900	개포현대 아파트부지



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면

위 치	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내역	면 적(m ²)	비 고
강동구 고덕동 215-1일대	자연녹지지역 → 일반주거지역	603.1	고덕 제7 근린공원
강동구 고덕동 213,213-1일대	일반주거지역 → 자연녹지지역	603.1	

